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14 발의연월일: 2025. 2. 5.

발 의 자:김기현·김예지·조배숙

이인선 • 최은석 • 김용태

김장겸 · 김정재 · 박성민

안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자등이 전력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해당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나, 시행령 규정에 따를 경우 전기사업자등이 정률 과징금보다 정

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기사업자 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전기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전기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의 부과·징수) ① (생 략)	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
	기사업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
	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
	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전기
	사업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전
	기사업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
	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
	<u>정할 수 있다.</u>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